목 차

1. 목적
2. 적용범위
3. 기본원칙
4. 주요절차
5. 문서화 및 기록
6. 관련 기준

1. 목적

본 규정은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, 지역사회 및 토착민의 인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고, 법적·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,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적용 범위

본 규정은 국내외 사업장의 부지 개발, 생산설비 증설, 토지 매입 및 임대, 신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공간적 확장 또는 환경·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.

3. 기본 원칙

지역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·조달·기술이전 등에서 우선권을 고려한다. 회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전통적 지식과 문화유산을 존중하고, 무형문화재·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병행한다.

-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사전 동의(FPIC: Free, Prior, and Informed Consent)를 보장한다.
- 인권·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.
- 국내 법령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, 공동체의 관습적 권리도 존중한다.

4. 주요 절차

① 인권 및 환경 영향 사전 검토

- 사업 초기단계에서 대상 지역의 인권·환경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, 필요 시 HRIA, EHIA를 시행한다.
- 평가 결과는 사업 추진 여부 및 방식 결정 시 반영한다.

② 토지 및 권리관계 확인

- 공적 장부(등기부등본, 지적도 등)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검토한다.
- 해당 지역에 전통적 또는 관습적 권리를 보유한 공동체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며, 문서로 기록한다.

- 공동체 권리자가 존재할 경우, 서면 동의서 또는 회의록 형태로 합의 기록을 확보한다.
- 해당 지역의 공동체가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자원 (물·산림·방목지 등)에 대한 사용권도 검토하고 보장한다.

③ 지역사회 참여 및 협의

협의 과정에서 여성·청년·소수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, 의견 수렴 결과는 사업계획서에 투명하게 반영한다

-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. - 협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되며, 주민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. - 설명회, 간담회, 민원접수창구 등을 운영하며, 회의록 및 참여자 서명을 보관한다.

5. 문서화 및 기록

- 권리 확인 및 협의 관련 문서는 최소 7년 이상 보관하며, 주민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접근을 허용한다.
- 권리 확인 및 협의 절차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ESG 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, 필요 시 외부감사 대응자료로 활용한다.

6. 관련 기준

-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, UNDRIP(유엔 토착민 권리 선언) 등을 준용
- UNGPs (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)
- ILO 협약 제169호 (토착 및 부족민 보호)
- FPIC 원칙 - 국토계획 및 이용에

개정이력

NO.	개정 일자	개정 조항	개정 내용	비고
1	2026년 01월05일		규정 신설	